

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심의 조서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과목명	보조사업명	지원근거	공모여부		보조사업자	사업내용	2020년 예산액 (본예산+추경)	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				조정액		심의조정액	비고	
				구분	유형				계	보조금			자부담	1차 (해당부서)	2차 (예산부서)		3차 (위원회)
										경정액	기정액	증감액					
계		1건						2,625,545	2,955,341	2,955,341	2,770,511	184,830	0	184,830	184,830	184,830	
건설 교통과	운수업계 보조금	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	공모제외	①	(주)예천여객	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보전	2,625,545	2,955,341	2,955,341	2,770,511	184,830	0	184,830	184,830	184,830	

□ 공모제외 유형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)

- * 유형①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
* 유형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(도비보조사업 포함)
* 유형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* 유형④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
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* 유형⑤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
* 유형⑥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※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·군·구가 시행하는 시·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